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교육위원회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규제 완화〉

■ 강득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350호)

■ 서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386호)

2024.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강득구의원안】

1. 발 의 자 : 강득구 의원 등 15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29.
3. 회부연월일 : 2024. 7. 30.

【서지영의원안】

1. 발 의 자 : 서지영 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30.
3. 회부연월일 : 2024. 7.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득구의원안】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하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축구, 야구 등 팀으로 이루어지는 운동종목의 경우에는 선수

한 명의 최저학력 미달로 팀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특히, 초·중학교 학생선수들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대회참가가 필요하며, 엄격한 대회 참가 제한으로 운동 입문 초기의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학생선수 저변이 감소되는 등 매우 과도한 규제로 작용됨.

이에 학교의 장은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중학생 등 학생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단서).

【서지영의원안】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학생선수들이 신체적 발달에만 치우치지 않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임.

하지만, 해당 제도의 경직된 시행으로 우수한 학생선수의 경기대회참가가 제한되어 해당 학생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실력 중심의 경쟁이라는 스포츠 기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육 분야만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최저학력에 미달한 학생선수의 경기대회의 참가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임의조항으로 개정하는 한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선수에 대해서는 경기대회 참가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Ⅲ. 검토의견

현행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1항1)은 학생선수2)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함)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 학교의 장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고등학생인 학생선수에 한하여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강득구의원안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에 따른 예외규정의 대상을 학생선수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이고,

서지영의원안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 학교의 장이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면서, 단서조항에 따른 예외규정의 대상에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포함하고, 이 경우 학교의 장이 경기대회의 참가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1)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게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2)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illegible]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1항은 기존에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 학교의 장이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음³⁾.

한편,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채 경기대회 출전 위주로 훈련을 받는 학생선수들이 많고 학생선수들이 졸업 후 운동 외의 분야로 진로를 정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교육부는 2017년 4월 체육특기자가 초중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음.

해당 발표를 통해 교육부는 「학교체육 진흥법」을 개정하여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체육특기자는 전국(국제)대회 참가를 제한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1항은 제20대 국회의 논의를 거쳐⁴⁾ 지난 2021년 현행 규정과 같이 개정됨⁵⁾. 참고로, 시행일을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로 정하여 2024년 3월 24일부터 개정 법률이 시행되었음.

3) 「학교체육 진흥법」 [법률 제11690호]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10037호)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12540호)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13438호)

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의안번호 제2108340호)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5923호)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6795호) 참조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의 개정 또한 함께 이루어졌는데,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의2⁶⁾제1항은 법 제11조제1항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를 “학생선수가 학생선수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라고 규정하여 학생선수가 학생선수의 자격으로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학생선수가 제1학기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제2학기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참가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6개월간 경기대회 참가가 제한되며 수업 결손이 없는 공휴일 및 방학 기간에도 참가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의 경우 법 제11조제1항 단서조항의 적용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특히 규제가 과도하다는 민원이 발생하였고, 2024년 4월 9일에는 일부 학생선수의 학부모가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위헌확인을 위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이루어지는 중에 있음⁷⁾.

6)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참가 제한 경기대회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란 학생선수가 학생선수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1. 제1학기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2. 제2학기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참고로,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역시 2024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었고 2023년 2학기말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는 2024년 1학기 대회 참가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아 경기대회 참가가 제한되는 학생선수는 2024년 9월 1일부터 발생함. 교육부에 따르면 참가 제한 학생선수의 통계는 현재 집계 중에 있음.

<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 현황 >

(단위: 명, %)

	2022년 1학기	2022년 2학기	2023년 1학기	2023년 2학기	2024년 1학기
초등학교	572(2.5%)	490(2.2%)	682(3%)	445(1.9%)	집계 예정
중학교	4,162(16%)	4,282(17.8%)	4,211(15.9%)	4,168(15.9%)	
고등학교	2,244(10.9%)	2,189(12.5%)	2,149(11.2%)	1,980(10.2%)	
계	6,978(10.1%)	6,961(10.9%)	7,042(10.3%)	6,593(9.5%)	

자료: 교육부

개정안에 따라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에 대한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학생선수들의 운동선수로서의 역량 강화와 커리어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음악 및 예술 등 예술 계열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 또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최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가 형평성 논란이 있는 제도이며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제도의 보완 및 완화를 요청한 바 있음.

7)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제1항 단서 위헌확인 (2024헌마319)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대회 참가를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강행규정을 완화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도 고등학생 학생선수와 같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는 대회 참가를 허용하도록 하는 두 건의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며, 다만 서지영의원안의 경우 강득구의원안과 같이 법 제11조제1항 단서조항의 적용 대상에 초등학생 학생선수도 포함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모든 초·중등학교 학생선수가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서지영의원안 제11조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아울러,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법 제11조제1항 본문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서지영의원안에 이견 없으며, 단서조항의 적용대상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6